##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81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1.

발 의 자:윤한홍ㆍ권성동ㆍ박성중

서범수 · 서일준 · 엄태영

유주경 • 유창현 • 이달곤

이채익 • 홍문표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·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'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' 범죄가 크게 증가('18년 2,457건 → '21년 22,752건) 하고 있음.

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,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의 하나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음.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・ 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 이 있음.

또한,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「형법」 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

임.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에 자체 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 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,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금이 환급되도 록 하는 등 신종수법에 따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.

또한,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조력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도 처벌함으로써 범죄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(안 제2조).
  자금의 송금·이체와 함께 현금의 전달 행위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으로 정의함.
- 나.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허용 함(안 제3조·제6조).

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기이용게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. 다만,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이 피해자 및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
한 이내에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함.

다.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의2).

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강화된 형벌을 부과하고 조력행위자도 처벌함.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함.

#### 법률 제 호

##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송금·이체된"을 "송금·이체되거나 피해자가 제공한 현금이 입금된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금전"을 "금전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현금"으로 한다.

다.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

제3조제1항 중 "피해자"를 "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라피해구제의 신청"을 "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신청 및 제2항"을 "신청과 제2항부터 제4항"으로 한다.

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 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"라 한 다)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신청 또는 제3조제2항"을 "신청이나 제3조제2항 또는 제3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신청을 한 피해자"를 "신청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5호 단서 중 "제공한"을 "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경우"를 "경우(다만,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)"로 한다.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-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 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.
-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 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

제7조제2항 중 "피해자"를 "피해자(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)"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피해자"를 "피해자(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)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피해자"를 "피해자(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)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피해자"를 "피해자(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)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제3조제2항"을 "제3조제4항"으로 하고, "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"를 "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"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또는 제2항"로 한다.

-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- ②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중대한

과실로 알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자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<u>,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전기통신금융사기"란 「전	2
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	
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	
인을 기망(欺罔)·공갈(恐喝)	
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	
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	
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	
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	
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	
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	
대출의 제공・알선・중개를	
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.	,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다.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
	하게 하는 행위
2의2.・3. (생 략)	2의2.・3. (현행과 같음)
4. "사기이용계좌"란 피해자의	4
자금이 <u>송금·이체된</u> 계좌 및	<u>송금·이체되거나 피해</u>
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	자가 제공한 현금이 입금된 -
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.	
5. "피해금"이란 전기통신금융	5

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・ 이체된 금전을 말한다.

#### 6. • 7. (생략)

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) ① 피해 | 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) ① 제2조 자는 피해금을 송금 • 이체한 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 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 설>

<신 설>

	_
	_
금전이나 피해자가 제공	7
한 현금	

6. · 7. (현행과 같음)

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 해를 입은 피해자-----

-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 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(이하 "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 융사기"라 한다)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 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 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 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 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 금이 송금·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 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 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4조(지급정지)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 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 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 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 다.
  -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
    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
    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
     ~ 4. (생 략)

$\underline{4}$ 제 $1$ 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
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
<u>.</u>
<u>⑤</u> <u>신</u>
<u>청과 제2항부터 제4항</u>
,
제4조(지급정지) ①
1
신청이나 제3조제2항 또는 제
<u> 3조제4항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
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해당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. 다만, 제1호의명의인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
- 3. 4. (생략)
- 5. 수사기관. 다만,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<u>제공한</u> 경우에 한정한다.
- ③ ④ (생 략)

제5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 저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 급정지 조치를 행한 <u>경우</u>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 권이 소멸되는 절차(이하 "채권

②
1. (현행과 같음)
2
신청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3
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
<u>특정된 피해자</u>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5
<u>제공한 경우</u>
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
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세5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
①
<u>경우(다만,</u>
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
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
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

소멸절차"라 한다)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6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6조(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제6조(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) ① (생 략) 피해구제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

<u>다)</u>
,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피해구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 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 청하여야 한다. 요청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### 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 다.

## ④ (생략)

- 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 저 기) ① (생 략)
  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한 <u>피해자</u>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	1. 제 $1$ 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
	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
	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
	다고 판단하는 경우
	2.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
	지가 있는 경우
	<u>④ 제3항</u>
	⑤ (현행과 같음)
1	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
	기) ① (현행과 같음)
	②
	- 피해자(대면편취형 전기통신
	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
	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
	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)

- ③ (생략)
- 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・
  - ② (생략)
  -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<u>피해자</u>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채권의 소멸)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사항을 해당 명의인, 제3조 및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ㆍ
② (현행과 같음)
③
피해자(대면
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
우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
제2항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
의미한다)
제9조(채권의 소멸) ②
교체기/미대교회점 거기투시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 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 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 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3 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

제10조(피해환급금의 결정·지급) 제
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,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#### ② ~ ④ (생 략)

제15조(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)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 원은 <u>제3조제2항</u>, 제4조제2항, 제5조제1항·제2항, <u>제6조제2항</u> 부터 제4항까지, 제7조제2항, 제 8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·제3 항,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

	-
·  10조(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	<u></u>
	- —
	- —
	- —
	- —
	-
- 피해자(대면편취형 전기통	<u>신</u>
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제3조제	<u> 3</u>
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	<u>특</u>
정된 피해자를 의미한다)	- —
	- —
	-
	-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115조(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	한
특례) ①	
<u>제3조제4항</u>	- —
제6조제3	항-
부터 제5항까지	
	-
	- —

를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 하고 요청 · 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15조의2(벌칙) ① 전기통신금융 | 제15조의2(벌칙) ①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📗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 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
  - 2.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 는 행위
  -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<신 설>


#### ② (현행과 같음)

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.

> ②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 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타 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 달한 자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 은 처벌한다.

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	<u>④</u> <u>제1항 또는 제2형</u>
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	
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	